

# 평창올림픽 사업비 2,244억원 부족

감사원 “조직위, 지출은 낮게 수입은 부풀려 책정” 지적  
참가 선수단의 철도수송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위 “지적사항 4차 재정계획에 반영... 이달 중 발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사업비가 2,200억원 이상 부족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 등을 실어나르기 위한 철도수송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에 따르면 조직위가 수립한 ‘제3차 대회재정계획’상에는 사업비는 적게 책정하고 수입은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부분을 보면 기념주화 제작·판매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233억원을 적게 책정한다.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8개 사업의 경우 711억원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지출 분야에서 적게 책정된 예산은 1,944억원이었다. 또 수입 부분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원금 4,496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아 300억원 이상이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금액을 합해 2,244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직위는 이와 관련,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제4차 재정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철도수송대책 시행 방안’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올림픽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원주까지는 기

존의 선로를 이용하고, 서원주에서 강릉까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주~강릉선’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편도 기준으로 하루 51회 올림픽열차를 운행할 계획이지만 기존 선로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선 망우~청량리 구간 상행선도 올림픽열차운행을 위해 현재 전동열차 운행을 시간당 7회에서 5회로 줄이면 최대 혼잡도가 171%에서

239.4%가 되고 경의선 수색~용산 구간은 대체 선로가 없어 올림픽열차와 전동열차가 동일한 시간대에 운행하면 전동열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봉 알파인(활강) 경기장’과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으나 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9건에 대해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

# 올림픽예산 잘못 예측 일부 경기장 안전이상

## 조직위 재정수립 허점 감사원 감사서 드러나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적설량 하중 고려 안해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2200억원이 넘게 부족하고 일부 경기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사업비로 2244억원이 부족한데도, 잘못된 예측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으며, 일부 경기장 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림픽조직위는 '제3차 대회재정계획'에서 올림픽 총 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2조 2731억원으로 똑같으며 적자발생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사업비는 적게 책정하고 수입은 늘려 잡아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에서 기념주화 제작·

판매 등 5개 사업에서 1233억원을 적게 책정했고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8개 사업(711억원)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 수입에서는 IOC의 지원금 4496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아 300억원 이상이 부풀려 예측됐다. 국내스폰서 등에 투입되는 3157억원에 대한 후원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3070억원 상당의 현물을 제공받았지만 대부분 불필요한 물품이어서 필수 물품 구입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테스트이벤트 개최를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중봉 알파인경기장은 안전성을 검토를 하지 않은채 일부 비탈면은 실제 설계도면보다 최대 19.2m가 높게 설치됐으며 곤돌라 철주를 비탈면에 설치해 기준안전률에 미달했다. 아이스하키Ⅱ경기장은 적설량의 하중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 지붕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올림픽조직위는 "2015년에 수립된 제3차 재정계획은 향후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오인·서울/진민수

# 민간건축 ‘공사비 미지급’ 횡포 못부린다

건축주, 사용승인 신청때 시공사 서명·날인 받아야  
대금 적기지급 장치 될 듯... 등록증 불법대여도 근절

민간건축 시공자가 건축주의 불합리한 공사대금 미지급에 맞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는 민간건축공사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도 건축물 착공 때는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가 착공신고서에 서명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사완료 후 제출하는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서명토록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민간 건축주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공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안전 확보와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도 가능해지게 됐다.

이전까지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서에 공사 관계자를 직접 기재한 후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했다. 허가권자는 대부분 내용 확인 없이 그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공사 관계자의 체계적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시공자가 중간에 건축주와 계약해지를 했음에도 건축주가 시공사 허락없이 기재해 건축물대장에 올라간 사례도 허다했다.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

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엄격한 공사 관계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공사 서명·날인 제도가 폐지되다보니 불량 건축주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행위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주가 마음만 먹으면 사용승인 신청서를 조작할 수 있었고 건축주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착공 신고서만 내고 불법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데 2014년 천안 아산에서 오피스텔이 완공 직전에 기울어진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부실시공 건축물도 손쉽게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결국 안전사고·하자가 발생해 입주민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사고책임을 물으려해도 건축 관계자 이력관리가 안되다 보니,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시 공사 관계자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사 서명이 의무화되면 공사에 참여한 건축 관계자의 이력관리가 철저해진다. 건축 관계자의 신상과 소재 파악이 명확해진다. 책임시공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셈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건축물 안전·책임시공 확보와 건축 관계자 이력관리를 위해 건의한 내용이 결실을 맺었다. 이는 공사비 제값 받기,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근절, 안전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